

이사회 규정

제정 2012.05.12

개정 2019.06.01

개정 2023.03.01

제1조 [목적]

이 규정은 이에이트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 라고 한다)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적용범위]

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으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.

제3조 [구성]

-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한다.
-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. 대표이사가 유고시 또는 기타사정으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.

제4조 [감사 및 관계자 출석]

-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관계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5조 [소집]

-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,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그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.
- 이사회 소집은 회의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(전자문서 포함)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이사회 소집 통지시에는 심의할 안건과 그 안건에 관련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.

제6조 [이사회의 성립 및 결의]

1.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성립된다.
2.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단, 이사회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의 결의는 재적이사 2/3 찬성으로 한다.
3. 이사회는 이사가 직접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 [의결사항]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

1. 경영 관련 사항
 - ① 주주총회의 소집
 - ② 재무제표의 승인
 - ③ 정관의 변경
 - ④ 자본의 변경
 - ⑤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⑥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
 - ⑦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, 이전, 폐지
2. 재무 관련 사항
 - ① 신주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의 제3자 배정
 - ②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
 - ③ 사채의 발행
 - ④ 전환사채의 발행
 - 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 - ⑥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50억 이상의 장기차입
 - ⑦ 부동산 취득 및 처분, 양도
 - ⑧ 중요한 회계처리기준과 관행의 변경
 - ⑨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, 양도
 - ⑩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 - ⑪ 전 각 호 외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3. 이사회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로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4. 다만 관계법령 및 정부의 지침에 따른 제 규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한다.

제8조 [서면결의]

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적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.

제9조 [의사록]

1.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, 출석 이사 및 감사 전원 이 기명날인 한다.
2.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제기한 자는 그 뜻을 의사록에 기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03월 01일 부터 시행한다.